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TRADE REPORT

수출기업의 사후 원산지관리 필요성 및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홍나현 | 신대동관세법인 컨설팅본부 관세사



수출기업의 사후 원산지관리 필요성 및 효과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지난 2020년 9월, 인도에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던 수출자를 당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 원산지관리규칙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국 현지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던 수입자들은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원산지 판정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며, 개별 판정기준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해당 기준에 대해 하단에서 세세하게 짚어본다.



홍나현
신대동관세법인 컨설팅본부
관세사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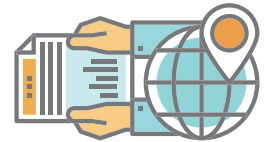
지난 2020년 9월, 인도에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던 수출자를 당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 원산지관리규칙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국 현지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던 수입자들은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를 실시하던 수출기업과는 달리 간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던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인도 수입자의 “FORM I” 작성 요청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이처럼 수입국 세관의 갑작스런 원산지 검증 강화에 수출기업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사후 원산지관리 방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1] FORM I

구성		주요내용	
제1절	서식 작성요령		
제2절	수입신고시 제출할 정보		
제3절	수입 전에 소지하여야 할 정보	제1부	품목명/생산공정/원산지결정기준
		제2부	1. 사용된 역내산 원재료 기재
			a.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b. 누적조항 적용 여부
			c. 간접재료/중립재, 포장재 등 추가기준 적용 여부
			d. 가치비율 기준 적용 여부
			e. 세번변경 기준 적용 여부
			f. 공정기준 적용 여부
			g. 소급발급 여부
h. 직접운송 여부			

자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2020.11)

2.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관리 방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수출 물품 HS CODE에 대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선택기준으로 규정된 경우, 역내산 판정에 유리한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급할 수 있으며 FTA 사후관리 역시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의 충족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면 된다.

이하에서는 수출기업이 원산지 판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의 원산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1)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어 소요 되는 각각의 원재료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제품의 HS CODE로 변형됨을 입증함으로써 원산지 기준을 충족 시키는 기준이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완제품 HS CODE 분류 근거만큼 원재료의 HS CODE 분류 근거가 중요하고, 각각의 원재료가 어떤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요되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원재료의 HS CODE 분류 근거를 일일이 구비하기란 어렵지만 최소한 원재료의 성분 및 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BOM에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발주서 또는 MSDS)를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서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과 원재료 HS CODE가 상이함이 확인될 경우에 별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

하지만 HS CODE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HS CODE가 상이하다고 해서 사후관리 필요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물품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완제품과 HS CODE가 상이하나 동일 세번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주요 원재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한 짧은 바늘 팁의 HS CODE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철강제 기타제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만일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는 완제품이 피부과용 의료기기(제9018.90-80호)일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완제품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의료기기 전용 부분품의 경우 완제품과 HS CODE 6단위까지 동일한 제9018.90-9090호로 분류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완제품 특성에 따라 동일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요 원재료를 선별하여 원산지 판정 후 협력 업체로부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세번변경기준 원산지관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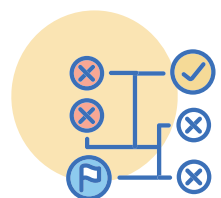
② 품목분류사전심사

완제품과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될 여지는 없더라도 성분, 재질만으로 HS CODE 분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다룬 것처럼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원재료 자체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HS CODE 분류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원재료일지라도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HS CODE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진행할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출물품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이러한 수출물품에 동일하게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의 경우라면 대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진행이 HS CODE 관리 차원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준 연도 확인

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에서 놓쳐선 안되는 것 중 한 가지는 바로 활용대상 FTA 협정의 기준 연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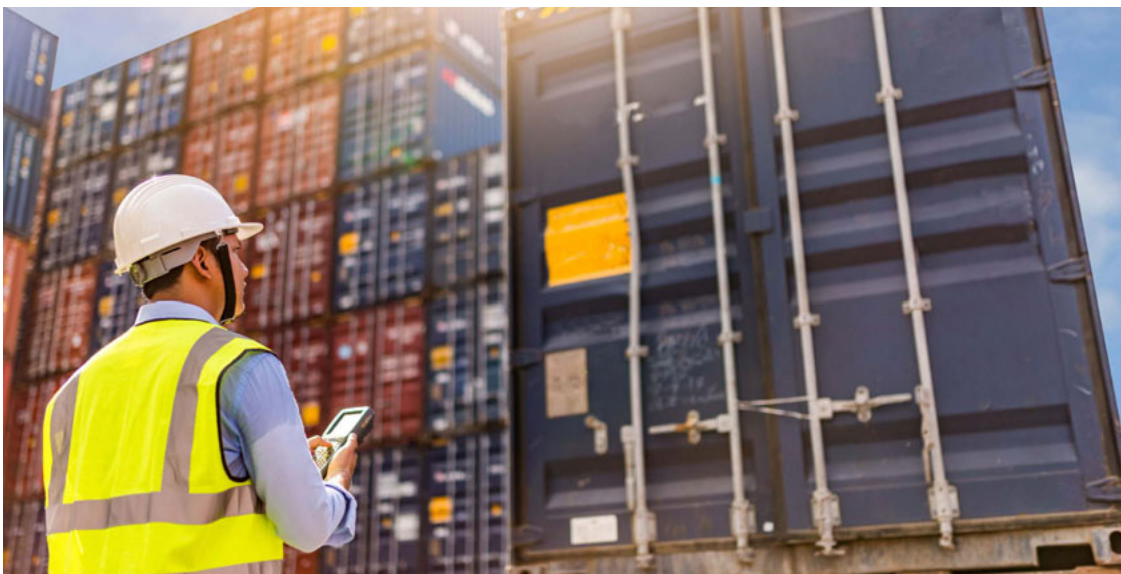
같은 원재료일지라도 협정별로 상이한 HS CODE를 사용하는데 이는 협정마다 HS CODE 분류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BOM에 기재된 원재료 HS CODE가 기준연도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관세사 등 전문인력에 확인을 요청한 후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표 2] HS CODE 및 기준연도

기준연도	국가
HS 2007	EU, 터키, 뉴질랜드, 인도, 페루, 영국
HS 2012	EFTA, 미국, 베트남,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칠레, 싱가포르, 중미
HS 2017	APTA, 아세안

자료: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more>



2)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은 국내 생산공정을 통한 원재료 HS CODE의 변경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보는 세번 변경기준과 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비율로 환산하여 완제품 FOB(한-EU FTA의 경우 EXW) 가격 대비 협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일 경우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경우 각 원재료의 단가, 소요량 확인이 필요하고, 단가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많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기준 활용 시 원재료별 단가 입증 자료를 구비하고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부가가치비율이 여유롭게 충족되는 경우엔 원재료 단가 변동이 크지 않는 이상 그만큼 원산지 관리 위험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기준은 매력적인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부가가치기준 사후 원산지관리에는 크게 완제품 및 원재료의 단가 변동 관리와 범퍼울 설정 등이 있다.

① 단가 관리(완제품, 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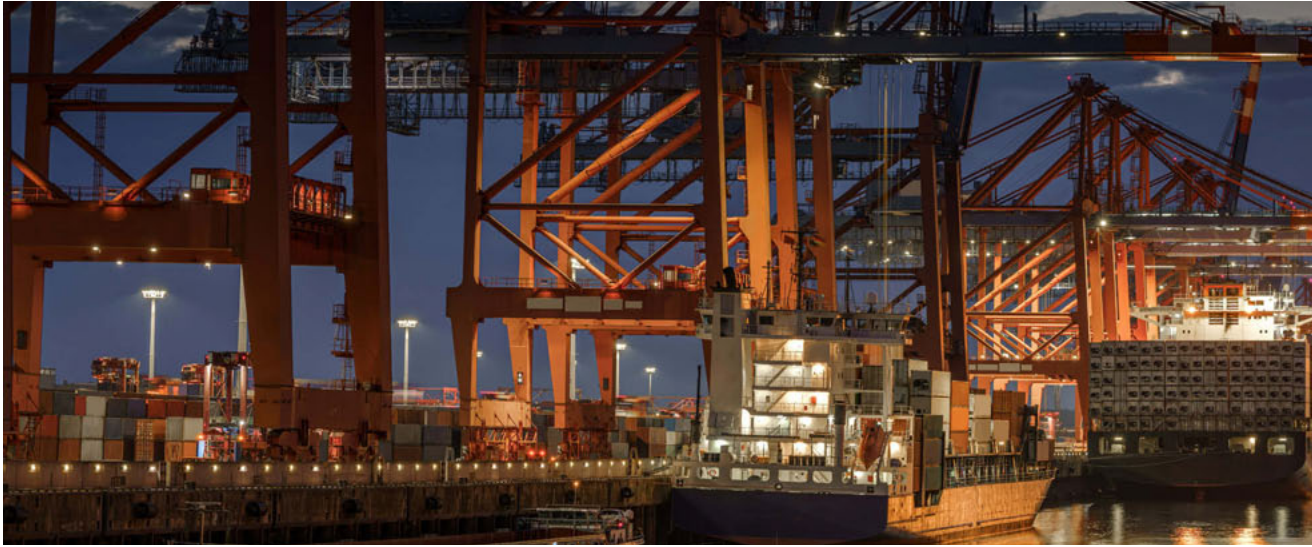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기업은 동일 원재료 일지라도 구매 주기가 빈번하고, 대량구매에 따른

수량할인으로 단가 변동이 잦은 경우 BOM에 기재 할 평균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난감한 게 사실이다.

ERP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자재코드만으로 구매 정보를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라면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BOM상의 단가와 일일이 대조하여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재료 구매단가는 완제품 생산 리드타임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인 기간 내 구매가 이루어진 원재료의 단가여야 하고, 향후 원산지관리를 진행할 때 역시 처음 부가가치비율 산출 시 구매시점부터 검토 주기 내 구매가 이루어진 원재료 단가 변동 추이를 살피는 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원재료가 투입 되는 완제품의 수출가격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완제품 단가는 국가별, 거래처별, 모델별로 상이한 게 일반적이거나 원산지관리에 있어 완제품 수출가격은 당연히 FTA 체약상대국 내 증명서 발급 대상 거래처에 수출하는 제품의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만일, 신규 수출거래인 경우일지라도 수출기업이 내부적으로 산출한 예상 수출가격을 토대로 합리적인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수출가격 역시 원재료 검토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출 기업에서 설정한 검토주기 내 특정 거래처에 판매한 완제품 판매가격 변동 추이를 살피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② 원재료 변동 관리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투입 원재료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특정 원·부자재가 생산 라인에서 빠지거나 다른 재료로 대체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완제품 부가가치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공기 조절기를 생산한다고 하였을 때, 공기조절기 내 압착링을 알루미늄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면 분명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단가 차이만큼의 완제품 부가가치비율 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가가치비율을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생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완제품 생산현황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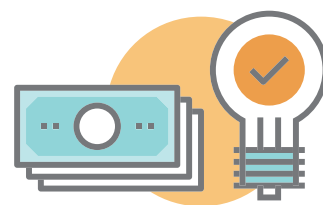


③ 범퍼울 설정

부가가치비율을 관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수출기업 자체적으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비율보다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수출가격 하락에도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동일한 제품의 한-인도 CEPA 협정의 경우는 15%의 범퍼울이 설정된다.)

아래의 표처럼 제3920.49호의 한-아세안 FTA 협정은 RVC 40%를 규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RVC 50%를 기준으로 설정한 후 이에 맞춰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한다면 10% 내의 원재료 단가 상승 또는



[표 3] 범퍼울 설정

구분	품명	HS CODE	한-아세안	한-인도
1	PVC SHEET	제3920.49호	RVC 40% (범퍼울 50%)	RVC 40% (범퍼울 50%)
2	PET SHEET	제3920.62호	RVC 40% (범퍼울 50%)	RVC 40% (범퍼울 50%)

자료: 저자 작성

3. 원산지증빙서류별 검토 주기 설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결정 기준별로 그 종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 주기 내에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원산지증빙서류의 검토 주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변화가 있다면 변동 내용이

수출물품 자체가 많거나 단일 물품이더라도 규격별로 모델이 다양한 경우라면 많은 원산지증빙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이 담당자에게 부담스럽고 과중한 업무일 수 있다.

[표 4] 원산지증빙서류별 검토 주기

구분	서류 종류	검토 주기
1	BOM, 제조공정도	6개월
2	원산지소명서	1년
3	원산지(포괄)확인서	1년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1-3년
5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변동 있는 경우

자료: 저자 작성



4. 결론

따라서 원산지 판정서류별 검토 주기를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판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중에서도 HS CODE 및 단가 변동 가능성이 큰 제조원가명세서(BOM) 검토 주기는 3-6개월로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낮은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등의 검토 주기는 1년 이상 혹은 담당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로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언제까지나 수출기업 혹은 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빈도에 따라야 하며, 검토 주기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이 7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 X 100)가 넘는 상황에서 FTA는 더 이상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지속 가능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사후 관리의 필요성과 효율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는 FTA-PASS 및 FTA-KOREA와 같은 시스템의 접근성이 많이 낮아진 만큼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원산지관리 효율화에 대해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

